

1993년도

# 축산발전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양계)

—농림수산부—

단위 : 호

## 1. 축산경영개선

### 1) 기본방향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업구조의 개선
  -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농가 육성
- 축산물생산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비절감
  - 양계·양돈의 계열조직화
  - 축사시설개선 및 기계화
  - 축산단지조성 확대
- 종축사육시설의 개선
  - 종돈장, 종계장, 부화장시설 개선
- 축사시설의 표준화 및 경영 개선 지도
- 특수가축 지원 및 연구 강화

### 2) 축산업구조개선 목표

-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축산농가 육성
  - 축종별 전업규모

	한우	젓소	돼지	닭
규모	10두	30~40	500~1,000	2~3만수

- \* 한우는 10두 규모의 부업규모 유지
- 육성목표(전업규모이상)

축종	연도	'92	'97
젓 소	:	3,445	9,000
돼 지	:	2,099	6,000
닭	:	1,281	2,000

※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총사육두수의 50% 이상 사육

## 가. 가축(닭·돼지) 계열화사업

### (1) 목적

-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일정소득 보장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전문경영주체 중심 전문화로 생산비절감 및 유통단계 축소
- 계열화 사업자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소비 확대

### (2) 추진방향

- 계열화 사업자는 종돈장(종계장)·도축장(도계장), 가공공장 등 계열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 계열농가에 생산요소(가축, 사료, 약품 등) 및 사양기술을 제공하여
- 계약생산된 가축(축산물)을 전량 책임 수집하여 직접처리·가공 후 판매

###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량 : 10개소
- 지원대상 : 닭·돼지 계열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 사업기간 : '93~'94년(2년간)
- 사업비 : 500억원
- 지원내역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사업비내역	
			용 자	자 담
개소	백만원	백만원		
10	5,000	50,000	35,000 (70%)	15,000 (30%)

- 재원 : 농어촌발전기금
- 융자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8% 단, 생산자단체는 5%

### (4) 세부실시 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① 지원대상자선정 : 농림수산부장관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일반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 사업자 지정 및 지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열화 사업자 규모의 20%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함.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양돈, 양계업협동조합은 20% 이상 실적이 없어도 가능 ○ 계열화사업 대상가축 및 사업자 규모 - 돼지 : 30천두 이상(계약농가당 : 500~2,000두 수준) - 닭 : 1,000천수 이상(계약농가당 : 2~5만수 수준) ○ 계열화사업 방법 -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와 계약에 의해	도지사, 축협중앙회

추진내용	주관(협조)
생산하되 자재(어린가축, 사료, 약품 등)를 공급하고 생산된 가축을 수집하여 처리·가공 및 판매를 전담하고 -계열농가에는 사육수수료 지급을 원칙으로하여 생산 ○ 계열화 사업자의 시설확보 -계열화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시설을 대상자 지정일로부터 2년내 갖추어야 함 [ 돼지의 경우 : 도축장, 가공공장, 판매장 육계의 경우 : 도계장, 부화장, 종계장 산란계의 경우 : 계란집하장, 부화장, 종계장 단, ① 도축장(도계장)은 기존 시설을 계열조직화하여 이용 가능 ② 종돈장, 종계장 등 어린가축 생산은 계열농가중 전문화하여 계약 생산공급할 수 있음. ③ 선정절차 ○ 계열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조합, 축산업, 종축업, 육가공업, 사료생산업 등)는 계열농가 확보 등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 신청 ○ 도지사는 계열화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가 계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서와 지도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 신청 ○ 계열화사업자의 신청 서류 -계열화 사업계획서에 대한 도지사의 검토의견 및 지도계획서(일부시설을 타 시도에 설치코자할 경우 해당 도지사의 검토 의견서 첨부) -계열화사업 실적 -계약농가의 계약확인 -계열화사업자의 경력 -사업계획서(별첨 작성 요령에 의함) ○ 농림수산부장관은 돼지·닭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농가, 학계, 행정기관 등 관계자로운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협의회에서 도지사가 신청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계열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지정하여	도지사

추진내용	주관(협조)
<p>지원 대상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감독원의 여신규제 대상자가 아니고 담보능력이 있는 사업자</li> <li>-계열화 사업자는 [가축·사료 등 생산요소 공급에서 생산물의 도축, 가공, 판매 및 농가지도까지 전담하는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물의 일관생산 체계를 유지</li> <li>-도지사는 지원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농가와 의 계약 불이행시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li> <li>-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을 확인하여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축협도지회장은 도지사가 통보한 사업추진성과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고 업체별 대출사항을 도지사 에 보고</li> <li>-기타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부 공고 제 91-29호(가축계열화 생산사업 추진요령 ' 91. 5. 16)에 의거 사후관리</li> </ul>	

## 나.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

### (1) 목적

○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양축농가를 선발,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함.

○ 일반 양축농가의 기술 및 경영개선 지표가 되도록 함

### (2) 기본방침

○ 전업규모이상의 경영형태를 지향하는 농가에 지원

○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는 행정 및 지도기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집중적인 지도관리 실시

-경영개선 및 사양관리 기술 등 지도

### (3) 사업계획

○ 사업주관 : 도지사

○ 지원대상 : 양축농가(낙농, 양돈, 양계)

- 사업기간 : '93~'94(2년간)
- 지원자금의 용도 :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
- 토지구입비, 입식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투자사업비로 사용가능
- 지원내역

사업명	단가	사업량	추진자금 용자액	비고
낙농	100	100	100	
양돈	150	120	180	
산란계	200	60	120	
육계	100	20	20	
계	550	300	420	

※ 한우분야는 별도 지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용자지원(기 축산진흥기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단가에서 용자잔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지원가능)

-용자조건 : 연리 5%, 2년거치 8년상환(낙농은 3년거치 7년상환)

### (4) 세부실시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p>(가) 대상자 구비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노동력으로 젖소·돼지·닭을 사육하는 자</li> <li>-다만, 현재 일부 고용노동 사용자도 시설을 가족노동 위주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대상으로 선발 가능.</li> <li>다만, 부부중 1인이 다른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자녀가 함께 종사할 때에만 가능</li> <li>-다음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젖소 20~100두, 돼지 300~1,000두, 닭 1~3만수(축협조사시점 기준)</li> <li>• 젖소는 조사료생산기반(초지, 사료포)을 두당 0.1ha 이상 갖추고 착유를 주업으로 하는 자 우선</li> </ul> </li> <li>○ 55세 이하로서 5년이상 희망축종을 사육하고 있는 자</li> <li>-단, 56세이상의 경우 자녀가 같이 전업으로 종사할 경우 가능</li> </ul>	<p>도,군(축협)</p>

추진내용	주관(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수준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경영일지를 충실하게 기장하고 있는 자 우선</li> <li>◦ 현장훈련실시, 시범농장으로 개방 등 동일축종 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자에 우선</li> <li>◦ 행정구역상 시지역에 사업장을 가진자는 제외</li> <li>(나) 대상자 선정절차</li> <li>◦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축협(지역·업종), 협회(도협의회, 군지부, 분회 등), 낙우회 등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서는 '91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축정 27420-340('92. 4.30)호</li> <li>-축협 등에서는 희망자의 사업계획 작성을 사전에 지도</li> </ul> </li> <li>◦ 신청서를 접수한 축협 등 생산자단체는 희망농가가 제시한 기술수준과 경영일지 작성의 충실도를 확인한 후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해지역의 축협(지역·업종조합)에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농가는 기술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경영일지중 일부의 사본을 사업계획서에 첨부</li> <li>-생산자 단체는 제출된 서류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 평가</li> </ul> </li> <li>◦ 축협조합장은 신청자의 대상자 구비요건의 결격여부와 담보능력 등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협은 현지출장, 인근 양측가 및 이장과의 대담, 필요한 서류의 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종합평가하여 의견서를 작성</li> </ul> </li> <li>◦ 군수는 축종별 심의회를 구성, 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하여 의견서를 첨부, 도지사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회구성 : 양측가, 축산관련단체(자생조직포함), 지도 및 행정기관, 학계 등의 대표로 구성(생산자 대표가 2/3이상 참여)</li> <li>※ 축산관련단체의 임·직원은 생산자 대표로 간주</li> </ul> </li> </ul>	<p>도,군(축협등 생산자단체)</p>

추진내용	주관(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는 자체의 평가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고 축협도지회에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지사의 대상자 확정 즉시 융자금대출 가능</li> <li>-대상자 선정시 지원농가수의 확대를 위하여 호당지원액을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축소시켜서는 않되나, 농가당 지원금액을 상한액 개념으로 운용하여 대상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금액(농가의 경영규모나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금액)만큼만 요청(지원)하고 여유자금 발생시 지원농가의 확대도 가능함.</li> </ul> </li> <li>(다) 행정지원</li> <li>◦ 지도 및 행정기관과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기관 : 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 축사건축허가 등 제반사항 협조</li> <li>-지도기관 : 사양관리기술 및 경영개선 지도</li> <li>-축협 등 생산자 단체 : 사업계획작성 지도, 기자재 구매 알선지도 등</li> </ul> </li> <li>◦ 축협중앙회에서는 융자금 지원시 간소한 대출방안 및 신용대출 확대방안 등 강구</li> <li>◦ 사업대상자는 축산경영단 사업대상농가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경영분석 실시</li> <li>(라) 선도양축농가의 의무</li> <li>◦ 경영개선 계획 목표이상 이행(경영개선 일지 기장)</li> <li>◦ 일반양축가에 대한 정보제공, 사육장 견학 허용 등 선도적 역할 이행</li> <li>(마) 사후관리</li> <li>◦ 각급 행정기관(도, 군)에서는 융자기간 종료시까지 다음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서상의 사업추진상황</li> <li>-부여된 의무의 이행상황</li> <li>-축산경영진단사업에 의한 경영분석 지도</li> </ul> </li> <li>◦ 축협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여신관계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li> </ul>	<p>도, 군(농촌지도소, 축협)</p> <p>사업대상자 (관련기관, 단체)</p> <p>도,군(축협)</p>

추진내용	주관(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소요자금의 10% 범위내에서 사업착수금으로 우선 용자 가능</li> <li>-지원자금의 적격 사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외 사용시 대출금 회수 및 결과보고</li> <li>(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급 행정 및 지도기관과 축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는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내 축산농가에 홍보</li> <li>○도지사는 사업계획서상 '93년도중 투자금액을 제외한 이월액('94투자계획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추가선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부적격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되 사후에라도 부적격한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자금 회수조치</li> <li>-부적격자를 추천한 축협 등 생산자단체는 '94이후 추천기관에서 제외</li> <li>○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실시</li> </ul> </li> <li>(사) 사업추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희망자 신청마감 : 2. 27일까지</li> <li>○축협(지역·업종)접수 : 3. 15일까지</li> <li>○지역축협 조사결과 통보(축협→군) : 3. 31일까지</li> <li>○군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추천(군→도) : 4. 30일까지</li> <li>○대상자 확정 및 농림수산부 보고(도→농림수산부) : 5. 31일까지</li> </ul> </li> </ul>	<p>관련기관, 단체</p>

## 다. 축사시설개선사업

### (1) 목적

-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의 기계화 및 규모화 촉진
- 축사환경 개선에 의한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생산

### (2) 추진방향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설치
- 기존 부업규모 축산농가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가로 육성

###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량 : 3,500개소
- 지원대상 : 소 100두, 돼지 2천두, 닭·오리 30천수 이하 사육농가
- 사업기간 : '93년(1년간)
- 사업비 : 1,750억원
- 지역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사업비내역	
				용자	자담
농어촌발전기금	개소				
	2,380	50	119,000	83,300	35,700
축산진흥기금	1,120	50	56,000	39,200	16,800
계	3,500	50	175,000	122,500	52,500
			(100%)	(70)	(30)

- 용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용자비율 : 70%, 년리 5%

## 라. 종계장 시설개선 사업

### (1) 목적

- 종계장시설 개선으로 종계생산성 향상 및 우량종란 생산
- 종계 사양관리체계 개선으로 우량병아리 생산보급
- 종계장 자동화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

### (2) 추진방향

- 종계장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개선 및 자동화 시설설치
- 시설개선에 의한 종계 사양관리 체계 개선으로 병아리 수급안정

###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량 : 9개소
- 지원대상 : 양계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 종계장 중에서 개축 또는 신축을 희망하는 사업자
- 사업기간 : '93년(1년간)
- 사업비 : 18억원
- 지원내역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사업비내역	
			용 자	자 담
개소	백만원	백만원		
9	200	1,800	1,260	540
(개소당)	(200)	(200)	(140)	(60)
		(100%)	( 70)	(30)

— 재 원 : 축산진흥기금

— 용자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

### (4) 세부실시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① 지원대상자 선정 : 농림수산부장관 ② 선정기준 ○ 기존 종계장 중에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자 ○ 시설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 ○ 계열화사업 및 양계산물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종계장 우선지원 ③ 선정절차 ○ 도지사는 기존종계장 중에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 농림수산부에 지원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시 현지 확인하여 지원대상 부분 사업을 자기 자금으로 기착수 하였거나, 완료한 자는 제외 — 은행감독원의 여신규제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 농림수산부장관은 도지사가 지원신청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대	도지사(축협 중앙회장)

추진내용	주관(협조)
상자를 선정하고 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 농림수산부장관은 지원 대상자 축협, 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양축농민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최종지원 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 ○ 축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자별 자금지원 ④ 자금의 용도 ○ 지원된 자금은 종계사의 신축(증축, 개축포함) 내부자동화시설,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비에만 사용 ○ 부지구입비, 부대시설비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⑤ 용자조건 ○ 용자한도 : 사업자당 140백만원이내 ○ 용자비율 : 시설비의 70% 이내 ○ 용자취급기관 : 축협중앙회 ○ 용자대상자 :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종계장시설 개선대상자 ⑥ 여신관리 및 채권보전 ○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용자대상자에 소요자금의 10%범위내에서 사업 착수 자금으로 우선 용자조치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해 여신관리 ○ 용자 취급기관에서는 축산농가의 부동산 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 보험제도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 농가에 편익을 제공할 것 ⑦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도지사 나) 사후관리 절차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사업완료시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부에 보고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추진내용	주관(협조)									
<p>후 조치 단, 내역변경사항이 단순한 경우는 도지사가 검토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 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기성고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을 거쳐 용자취급기관에 통보</li> <li>○ 축협도지회장은 여신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기성고(도지사가 통보한 확인서)에 따라 지원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자별 대출사항을 도지사에 보고</li> <li>○ 도지사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li> </ul> <p>⑧ 사업 계획 수립시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종계장 현황(축사, 인력, 종란공급 실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규모 및 경영방향 등 전체사업 내용 요약</li> </ul> </li> <li>○ 시설개선 계획(배치도 등)</li> <li>○ 사업장 예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확보 등 증명할 서류</li> <li>- 도지사의 적지여부 검토의견서</li> </ul> </li> <li>○ 사업내용</li> <li>○ 투자규모(사업비목별 재원별 투자내역)</li> <li>○ 자금조달 및 상환 계획</li> <li>○ 일정별 추진계획</li> <li>○ 사업완료 후 규모(기존시설과 개선 후 효과포함 분석대비)</li> </ul> <p>⑨ 보고 등</p>	<p>도지사</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보고기한</th> <th>보고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대상자 신청</td> <td>'93년 3월 말까지</td> <td>도지사</td> </tr> <tr> <td>사업완료 보고</td> <td>완료후 10일 이내</td> <td>도지사</td> </tr> </tbody> </table>		보고기한	보고기관	사업대상자 신청	'93년 3월 말까지	도지사	사업완료 보고	완료후 10일 이내	도지사	
	보고기한	보고기관								
사업대상자 신청	'93년 3월 말까지	도지사								
사업완료 보고	완료후 10일 이내	도지사								

## 아. 부화장 시설지원

### (1) 목적

- 우량병아리 생산보급으로 양계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병아리 수급조절 양계산물 가격안정 도모

### (2) 추진방향

- 부화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부화장 경영 합리화 유도
- 부화장 시설 자동화 설치로 우량병아리 생산공급 및 병아리 생산비 절감 유도

###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량 : 9개소
- 지원대상 : 양계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종계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기존부화장 경영자중 시설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
- 사업기간 : '93(1년간)
- 사업비 : 45억원
- 지원내역

사업량	단가	사업비	사업비내역	
			용자	자담
개소	백만원	백만원		
9	500	4,500	3,150	1,350
(개소당)	(500)	(500)	(350)	(150)
		(100%)	(70)	(30)

- 재원 : 축산진흥기금
- 용자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

### (4) 세부시설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p>① 지원대상자 선정 : 농림수산부 장관</p> <p>②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화장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자</li> <li>○ 시설설치가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li> <li>○ 계열화사업 및 양계산물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부화장 우선지원</li> </ul> <p>③ 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는 허가 부화장중 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 첨부 농림수산부에 지원 신청</li> <li>- 사업계획서 검토시 현지확인하여 지</li> </ul>	<p>도지사, (축협중앙회장)</p>

추진내용	주관(협조)
<p>원 대상부문 사업을 자기자금으로 착수하였거나 완료한 자는 제외</p> <p>-은행감독원의 여신규제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p> <p>○농림수산부장관은 도지사가 지원 신청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에 통보</p> <p>-농림수산부장관은 지원대상자 선정시 축협, 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양축농민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심의하여 선정</p> <p>○축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자별 자금지원</p> <p>④ 자금의 용도</p> <p>○지원된 자금은 부화장 건축비, 부화기 및 내부시설비에만 사용</p> <p>○부지구입비, 부대시설비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p> <p>⑤ 용자조건</p> <p>○용자한도 : 사업자당 350백만원 이내</p> <p>○용자비율 : 시설비의 70%이내</p> <p>○용자취급기관 : 축협중앙회</p> <p>○용자대상자 :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부화장 시설 지원대상자</p> <p>⑥ 여신관리 및 채권보전</p> <p>○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용자대상자에 소요자금의 10% 범위내에서 사업 착수자금으로 우선 용자조치 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해 여신관리</p> <p>○용자취급기관에서는 축산농가의 부동산 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 사업자 편익도모</p> <p>⑦ 사후관리</p> <p>가) 사후관리 책임자 : 도지사</p> <p>나) 사후관리 절차</p> <p>○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사업완료시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부에 보고</p> <p>-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사업 변경이</p>	<p>축협중앙회장</p>

추진내용	주관(협조)									
<p>불가피한 경우는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단, 내역변경 사항이 단순한 경우는 도지사가 검토조치</p> <p>○지원대상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기성고에 대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을 거쳐 용자취급기관에 통보</p> <p>○축협도지회장은 여신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기성고(도지사가 통보한 확인서)에 따라 지원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자별 대출사항을 도지사에 보고</p> <p>○도지사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p> <p>⑧ 기타사업 계획 수립시 참고사항</p> <p>○현부화장 현황(부화장면적, 부화기대수, 인력, 부화실적 등)</p> <p>○사업계획 개요(현황)</p> <p>-총규모 및 경영방향 등 사업내용 요약</p> <p>○시설개선 계획</p> <p>○사업장 예정지</p> <p>-부지확보 등 증명할 서류</p> <p>-도지사의 적지여부 검토 의견서 첨부</p> <p>○사업내용</p> <p>-종란확보 계획(부화능력과 확보능력 분석)</p> <p>○자금조달 및 상환 계획</p> <p>○일정별 추진계획</p> <p>○사업완료 후 규모</p> <p>⑨ 보고 등</p> <table border="1" data-bbox="734 1284 1077 1458"> <thead> <tr> <th></th> <th>보고기한</th> <th>보고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사업대상자 신청</td> <td>'93년 3월 말까지</td> <td>도지사</td> </tr> <tr> <td>사업완료 보고</td> <td>완료후 10일 이내</td> <td>도지사</td> </tr> </tbody> </table>		보고기한	보고기관	사업대상자 신청	'93년 3월 말까지	도지사	사업완료 보고	완료후 10일 이내	도지사	
	보고기한	보고기관								
사업대상자 신청	'93년 3월 말까지	도지사								
사업완료 보고	완료후 10일 이내	도지사								

## 바. 닭 능력검정 사업

### (1) 목적

- 종계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계종 선택지표 제공



◦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2) 기본방침

- 검정요원의 전문화
- 검정방법의 공정화
- 검정결과의 공표

##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대한양계협회
- 대 상 :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소
- 사업기간 : '66~영구

검정소검정	일반검정
15천수(산란 3, 육용 12)	도입 및 국내분양 종계

◦ 지원내역

	사업량	단가	보 조				용자 (축진 기금)	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축진 기금	소계			
검정사업비 부 화 기	15천수 1대				백만원 50 30	50 30		118	168 30
계					80	80		118	198

## (4) 세부실시요령

추진내용	주관(협조)
① 검정요령 ◦ 닭 능력검정 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 87-42호 '87. 8.21)에 의함	대한양계협회
② 닭 검정 위원회 운용 ◦ 검정란의 선별 및 배치 ◦ 검정기록의 분석 평가 ◦ 검정지도 및 개선방안 도출	대한양계협회
③ 검정성적 공표 등 ◦ 신 계종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수입여부 결정 ◦ 검정소검정 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 등에 공표 ◦ 일반검정결과는 신청자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 종계관리에 협조	대한양계협회
④ 자금지원	축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실적 및 공정에 따른 지원</li> <li>⑤ 보고 및 감독</li> <li>◦ '93닭 능력검정 세부계획 보고('93. 2월 말까지)</li> <li>◦ 검정소 및 일반검정 추진실적보고 (매분기 익월 20일까지)</li> <li>◦ 대한양계협회장은 각종보고서 관련 도지사에게도 보고</li> <li>◦ 경기도지사는 년2회이상 관련사업 현지 확인 점검</li> </ul>	대한양계협회
------------------------------------------------------------------------------------------------------------------------------------------------------------------------------------------------------------------------------------------------------------	--------

## 사. 계란 집하장 설치

### (1) 목적

-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 계란의 수급 조절에 의한 가격안정 도모
- 계란의 상품성 제고로 소비증대에 기여

### (2) 기본방침

- 계란의 규격별 포장화로 상품성 제고
- 생산농가의 공동출하에 의한 시장 교섭 능력 제고
- 계란 수집상의 유통 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비축사업 병행 추진으로 수급 조절 기능 강화

###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시·도 및 축협중앙회
- 대 상 : 축협조합(양계조합) 및 산란계 계열화 시행 업체  
- 산란계 계열화 업체는 기존의 사육농가와 계약을 해야 하며 상시 사육수수가 50만수 이상되어야 함.
- 사업기간 : '93. 1~12
- 사업규모 및 시설내역(개소당)

부지매입	건 물	차 량	선 별 기
500평	200	3대	2대
110백만원	160	3	227

※ 부지 및 시설규모, 사업비 등 세부 사업계획은 사업자 형편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내역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용자	자담	계
개소 2	백만원 500	700 (70)	300 (30)	1,000 (100)

—재 원 : 촉진기금

—용자조건

- 용자기간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 리 : 년 3~8%(축협 3%)

**(4) 세부 추진상황**

추진내용	주관(협조)
○ 산란계 계열화 업체는 시·도지사가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	시·도
○ 축협조합은 축협중앙회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	축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추천시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수지 계획서 — 산란계 계열화 업체는 사육농가와 의 계약서 및 계약농가별 사육수수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 자금집행 및 관리는 축협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축협중앙회
○ 보고 — 대상자 추천보고 : '93. 3. 31일한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완료보고 : 완료후 10일 이내	시 도, 축협중앙회

**아. 축협 혈청검사사업**

**(1) 목적 및 필요성**

○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상 수립을 목적으로 시·도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감염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 조기검색 및 질병발생동향을 파악하고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시기 실시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적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하기 위함.

**(2) 사업실시 기관**

- 가축위생연구소 : 진단액 등 생산공급 및 기술지도
- 가축위생시험소 : 혈청검사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 지도

**(3) 검사대상 질병 : 11종**

- 닭 : 뉴캐슬병 · 산란저하병 · 감보로병 · 전염성기관지염 · 추백리 · 마이코플라즈마병(6종)
- 돼지 : 돼지콜레라 · 단독 · 위축성비염(3종)
- 소 : Q열 · 우간질(2종)

**(4) 실시방법**

- 검사대상선정  
— 종계장이나 육계농장에서 직접채혈 또는 이곳으로 부터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 채혈하되 1개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계군혈청검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농장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 가능한한 오일백신 접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닭을 선정하되 접종일이 1년이상 경과된 닭으로서 백신제조회사(수입품 포함)별 제품별, 접종일자별로 구분하여 검사함으로써 면역역가의 지속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검물채취 : 매분기별 균분실시하되, 관내 양계농가에서 검사요청시 진단액 부족으로 인한 검사거부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양계**

